

의안번호	2218105
의 퇴 인	위성곤의원
회 답 일	2026.07.14.
추계번호	26C2069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의2제2항 제3호 신설 (학원의 종류)	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제2항). 3. 통합운영학원 : 제1호 및 제2호의 교습과정을 동일한 시설에서 시간대 또는 공간을 분리하여 통합 운영하는 학원	의무규정
2	안 제6조의2 신설 (돌봄학원의 지정 등)	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학원을 신청에 의하여 방과 후 교육과정 및 돌봄을 운영하는 돌봄학원(이하 “돌봄학원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(제1항)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돌봄학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 후 교육과정 및 돌봄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(제5항).	재량규정
3	안 제15조의6 신설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운영학원 등으로 전환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에 대하여 시설 개선, 프로그램 개발, 강사 연수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의2제2항 제3호 신설 (학원의 종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조의2 신설 (돌봄학원의 지정 등)	
3	안 제15조의6 신설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①동일한 시설에서 학교교육과정 교습과 평생직업교육을 각각 운영할 수 있는 “통합운영학원”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, ②국가 등이 방과후 돌봄을 수행하는 “돌봄학원”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
- 현행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학원법”)은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음¹⁾
 - － “학교교과교습학원”이란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, 초·중등학교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함
 - － “평생직업교육학원”이란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말함
 - 학원법은 학원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, 평생직업교육학원과 달리 학교교과교습학원에는 설립 제한 및 감독 규정이 적용됨
 - － 구체적으로,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 건축물 내에 설립·운영이 제한되고, 교육감의 교습비 조정 명령이 가능하며, 시·도조례에 따른 교습시간 제한을 받음²⁾
 - 개정안은 하나의 시설 내에서 시간대 또는 공간을 분리하여 학교교과교습과 평생직업교육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통합운영학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

1) 학원법

제2조의2(학원의 종류)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교교과교습학원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

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

나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

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. 다만,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2. 평생직업교육학원: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

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학원법

제5조(교육환경의 정화 등)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·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(이하 “유해업소”라 한다)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(교습비등)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,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.

제16조(지도·감독 등)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,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- 또한, 교육감이 방과 후 교육과정 및 돌봄을 운영하는 돌봄학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통합운영학원 및 돌봄학원에 대한 국가 등의 행·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함

□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운영학원 및 돌봄학원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(안 제2조의2 및 제15조의6) 통합운영학원에 대한 시설 개선,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지원 대상 학원의 수, 기존 학원의 전환 수요 및 지원 단가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이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현행 학원법은 시·도조례로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³⁾, 통합운영학원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수행될 각각의 교습과정에 부합하는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임
 - 그러나, 현시점에서 기존 학원의 통합운영학원 전환 수요 및 시설기준 충족 여부 등을 특정하기 곤란함
- (안 제6조의2) 국가 등이 돌봄학원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장보육, 늘봄학교 등의 돌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⁴⁾
 - 2026년 기준 연장보육 및 늘봄학교 예산은 각각 844억 700만원, 8,963억 8,700만원이며⁵⁾,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을 위해 1,06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바 있음⁶⁾

3) 학원법

제8조(시설기준)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4) 영유아의 경우 보육비(어린이집) 및 방과 후 과정비(유치원)를 지원하고 있으며, 초등학생(1·2학년)의 경우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시간 이후 매일 2시간의 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'늘봄학교'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
- 5) 연장보육은 국비 기준, 늘봄학교는 국비 및 지방비 합산 기준임
- 6) 교육부, 「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·교육 추진 방안」 (2026.2.), 8p

- 개정안에 따른 돌봄학원의 사업 범위는 상술한 기존 사업들과 상당 부분 중복되며, 돌봄학원의 시설·인력, 지정절차 및 취소요건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신규 지정될 돌봄학원의 규모 및 수요가 불확정적이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이 불확정적이므로 현시점에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